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나580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4. 21.

판 결 선 고 2023. 5.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519310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C가 2020. 1. 13.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장(액면금 230,000,000원)의 발행행위를 70,3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7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환승, 판사 석준협, 판사 노호성

1) 원고는 소장에서 C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C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70,32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와 관련하여 ‘70,325,000원의 범위 내에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택하기로 한다.